

한미 FTA와 경쟁정책¹⁾



정 영 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없는 통상협정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통상협정은 근본적으로는 협정 당사국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을 통하여 공적 장벽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에 예컨대 고질적인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만연해 있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통상협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접근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미 FTA협상에서도 통상협정과 경쟁정책과의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2차 협상이 끝나고 9월초 미국에서 제3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발효된 칠레와 싱가포르와의 FTA협정을 필두로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FTA협상을 추진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TA는 국가간의 차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주의를 근간하는 WTO협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GATT 제24조에서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²⁾를 지향하여 대외적 및 대내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FTA만을 GATT/WTO에 합치하는 지역협정으로 보고 있다. GATS협정 제5조에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지역통합의 과정에서 비차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³⁾ FTA의 확산이 국제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에 기여하는 주춧돌(building

1) 본 고는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우리 정부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2) See C. Fred Bergsten, Open Regionalism, 20 World Econ. 545, 548 (1997).

3)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상세는, 정영진, 자유무역협정, 국제경제법(대한국제경제법학회 근간) 참조. Mitsuo Matsushita et al.,

block)이 될 것인지⁴⁾ 아니면 Bhagwati 교수가 우려하는 “뒤죽박죽(spa-ghetti bowl)”⁵⁾ 현상이 나타나 결국 방해물(stumbling block)⁶⁾로 전락할 것인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는 FTA 후발주자로서 전자의 입장에서 있다. 즉 우리 정부는 FTA가 현재 지지부진한 WTO DDA협상의 보완제라는 인식하에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양자관계적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하여 FTA 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야심적인 FTAA를 추진하고 있고 호주와 FTA를 체결하는 등 FTA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앞서 우리나라를 FTA 파트너로 선택하였다. 한미 FTA협상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94년 체결된 NAFTA협정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FTA협상이다.⁷⁾

FTA는 기본적으로 통상협정이다. 따라서 FTA 협상국 정부의 공적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 기본적 관심대상이다.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공적” 무역장벽이 협상의 대상이다. 따라

서 “사적” 경쟁제한행위(private anticompetitive practices)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내지 경쟁법과 FTA와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무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없는 통상협정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통상협정은 근본적으로는 협정 당사국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을 통하여 공적 장벽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에 예컨대 고질적인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만연해 있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통상협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접근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상협정과 경쟁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일찍이 GATT의 모태가 되었던 1947년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에서도 사적 무역장벽을 규제하는 “경쟁에 관한 장(Competition Chapter)”을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nd) (2005) at 547-589.

4) See Miles Kahl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Economy of Integration 125-27 (1995); Jeffrey A. Frankel, Regional Trading Blocs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218 (1997); Gary Sampson,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17, in Contemporary Paths to Free Trade (Till Geiger & Dennis Kennedy eds., 1996). Peter Robson,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200 (2d ed. 1984).

5) Jagdish Bhagwati, *Stream of Windows: Unsettling Reflections on Trade, Immigration and Democracy*, (Cambridge, MA, & London: The MIT Press 1998) 290-92.

6) See Jagdish Bhagwati et al. eds., *Trading blocks: Alternative Approaches to Analyzing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1999); Nuno Limai, Preferential vs.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Evidence and Open Questions. *World Trade Review* 155-176(2006).; Anne O. Krueger, Free Trade Agreements versus Customs Unions 13-14 (Nat'l Bureau of Econ.Research, Working Paper No. 5084, 1995); Stephen P. Sorensen, Open Regionalism or Old-Fashioned Protectionism?: A Look at the Performance of Mercosur's Auto Industry, 30 U. Miami Inter-Am. L. Rev. 371, 398 (1998).

7) 미국의 FTA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effrey J. Schott eds.,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2004).

두고 있었고,⁸⁾ 지역협정인 NAFTA에서도 경쟁에 관한 장을 두고 있다. WTO에서도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을 신이슈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고 WTO 무역과 경쟁작업반이 양자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OECD에서도 무역위원회와 경쟁위원회의 합동 회의가 개최되어 양자간의 관계가 검토되어 왔다. 현재 WTO DDA협상에서도 유럽과 우리나라 등 의 주장에 의하여 경쟁이슈가 의제로 포함되었으나 지난 칸쿤각료회의에서 미국과 개도국의 반대로 사실상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제 경쟁이슈가 통상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역통상협정의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조약도 1957년 협정에서부터 카르텔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두어 경쟁법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쌍벽을 이루는 경쟁법제를 발달시키고 있다.

한미 FTA협정에서도 경쟁에 관한 장에 대하여 협상이 진행중이다. 미국은 NAFTA상의 경쟁에 관한 장을 기본모델로 하여 이후 FTA에서도 유사한 문안을 도입해 왔는 바, 금번 우리나라와의 FTA협상에서도 소위 NAFTA식 경쟁에 관한 장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단에서는 통상협정과 경쟁법의 상호관계를 간단하게 규명하고 NAFTA를 중심으로 기존

미국 FTA상 경쟁에 관한 장의 의미를 검토한다음 우리측의 경쟁 분야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통상협정과 경쟁법⁹⁾

통상협정은 공적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공적 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되는데 8차에 걸친 GATT/WTO협상을 통하여 관세장벽은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국제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국제무역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들이다. 기술표준화정책, 금융규제, 환경정책, 노동정책 등 중에는 시장접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규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정부규제에 대하여 WTO협정은 적극적인 실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positive integration), 원칙적으로는 비차별주의정책에 기초하여 소극적 규제(negative integration)를 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¹⁰⁾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비차별주의를 준수하는 한도에서 정책주권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 GATT/ WTO의 비차별주의는 균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WTO/GATT 패널의 확립된 견해이

8) See generally John H. Jackson,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1969).

9) 일반적으로는 장승화, 무역과 경쟁법/정책의 만남, 통상법률 25권 (1999.2) 참조. Seung Wha Chang,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Why A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United States?* 14 Duke J. Comp. & Int'l L. 1 (2004).

10) See, e.g. Ernst Ulrich Petersmann, From 'Negative' to 'Positive' Integration in the WTO: Time For 'Mainstreaming Human Rights' into WTO Law?, 37 Common Market Law Review 1363-1382 (2000).

다.¹¹⁾ 따라서 외국인(법인 포함)에게 균등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한 개별국가에게는 광범한 정책 재량이 허용된다.¹²⁾

그런데 통상협정에서 보호하는 “경쟁”의 개념은 경쟁법에서 보호하는 “경쟁”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상협정상의 “경쟁” 개념과 경쟁법상의 “경쟁” 개념의 비교는 대표적인 통상법인 반덤핑법/상계관세법과 경쟁법상의 경쟁 개념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가. 통상법과 경쟁법의 차이점

역사적으로 셔먼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이 지난 후에 제정된 반덤핑법은 제정 초기에는 셔먼법상의 개념인 약탈적 의도(predatory intent)를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¹³⁾ 그러나 이렇게 연혁적으로 동일한 뿌리를 두고 탄생한 통상법과 경쟁법은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대표적인 통상법인 반덤핑법은 제정 후 얼마되지 않아 “약탈적 의도”라는 요소가 빠지고 단순하게 수출국의 국내 정상가격보다 수입국에 대한 수출가격이 낮은 경우를 (가격)덤핑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반덤핑법은 약탈적이라는 의도

가 요건에서 제외되고 단순한 가격dumping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1974년 미국통상법은 기준의 “가격dumping(price dumping)”에 추가하여 소위 “비용 이하의 판매(below-cost sales)” 개념을 도입하였다.¹⁴⁾

이는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판매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경우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비용 이하의 판매개념을 적용할 경우 조사대상기간에 비용 이하의 판매로 인정되는 거래가 정상가격이 산정에서 빠지고 비용 이상으로 판매되는 거래만으로 정상가격이 산정되어 수출가격과 비교된다. 이 경우 비용 이하로 판매되는 거래와 비용 이상으로 판매되는 거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경우 전혀 덤피ング이 아닌데도 덤피ング으로 인정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아예 거래가격이 아닌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인위적으로 덤피ング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용dumping 개념은 일견 경쟁법상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경쟁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즉 평균기변비용이나 한계

11) WTO Analytical Index: Guide to WTO Law and Practice, 1st Edition (2003) at 222-225.

12) See generally, Gaetan Verhoosel, National Treatment and WTO Dispute Settlement: Adjudicating the Boundaries of Regulatory Autonomy(2002). See also Thomas Cottier and Petros C. Mavroidis, Regulatory Barriers and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World Trade Law (2002). See also Robert Howse, The Appellate Body Rulings in the Shrimp/Turtle Case: A New Legal Baseline for the Trade and Environment Debate, 11 27 Columbia J. Envtl. L. 491 (2002). See also, John H. Jackson, Sovereignty, the WTO and Changing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Law (2006).

13) See generally, Jacob Viner, Dumping: A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e (1923).

14) Gary N. Horlick, The United States Antidumping System 99, in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A Comparative Study (John H. Jackson & Edwin A. Vermulst eds., 1989).

비용이 아니라 총비용(fully allocated cost)을 기준으로 비용 이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경쟁법적 약탈적 가격설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¹⁵⁾

반덤핑법이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격덤핑 행위는 단순히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상이하게 책정하는 행위(differential pricing)로서 경제학적인 의미의 가격차별행위(price discrimination)가 아니다.¹⁶⁾ 미국의 경우 대공황기에 대규모 조직적인 유통시스템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Robinson Patman법이 제정되었는데 동 법은 “differential” 가격책정행위를 금지한다.¹⁷⁾ 이 점에서 반덤핑법과 Robinson Patman법은 일견 유사하게 보이나 그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다. 예컨대 일차적(primary-line) “differential” 가격책정행위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의 의미가 있는데 1993년 Brooke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Robinson Patman법상의 일차적 “differential” 가격책정행위도 Sherman 법 제2조상의 약탈적 가격설정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동 대법원은 위법한 약탈적 가격설정으로 판단하는 요건도 유럽사법법원의 태도와 달리 소위 “회수(recoup-

ment) 요건”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Brooke 사건 이후 약탈적 가격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¹⁸⁾ 이 점에서 현재 통상법과 경쟁법은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반덤핑법상 덤플링마진은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과정을 거쳐서 산출되는 바 이렇게 산출된 덤플링마진은 경제학적인 가격덤핑과 사실상 무관한 경우가 적지 않다.¹⁹⁾

또한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덤플링행위 이외에도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경쟁법에서도 거래의 불합리한 제한(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이나 경쟁이 상당히 감소(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해야 한다는 요건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상법상의 실질적 피해는 최소피해(*de minimus* injury) 또는 유의미하지 않은 피해(immaterial injury)가 아닌 정도면 족하므로 경쟁법상의 요건에 비하여 그 기준이 매우 낮다.²⁰⁾ 통상법은 기본적으로 관련산업, 생산자 및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경쟁법은 경쟁과정 및 소비자의 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 15) Harvey M. Applebaum, Harmonization of Antitrust and Antidumping Laws: An Opportunity for Creative Experimentation i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4 U.S.-Mex. L. J. 49 (1996).
- 16) 가격차별행위(price discrimination)와 가격에 차이를 두는 행위(differential pricing)의 구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2nd) 565(1999).
- 17) Robinson Patman법은 경제학적으로 불합리한 법이라는 이유로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으며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Herbert Hovenkamp, The Antitrust Enterprise 310-311(2005).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에서도 이 법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http://www.amc.gov/commission_document.htm).
- 18) See generally,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Predatory Pricing (1996).
- 19) Kenneth W. Dam, The Rules of the Global Game (2001)(정영진/윤재원, 글로벌게임의 법칙(2001), at 267-272).
- 20) See supra note 15.

관련시장의 정의, 인과관계의 인정 그리고 제소요건 등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²¹⁾

이와 같이 통상법과 경쟁법은 태생적으로는 유사성이 없지 않았으나 점차로 서로 다른 법영역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피제소국으로 관여한 WTO 소주사건에서도 WTO 패널은 경쟁법상의 관련시장 및 경쟁 개념을 WTO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의 해석에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²²⁾

나. 통상법과 경쟁법의 접근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법과 경쟁법은 서로 다른 법영역으로 각자 진화를 거듭하였으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양 법체계는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게 되었다. 우선 경쟁법의 영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무역과 통상을 고려한 법리가 발달하였다. 1945년 Alcoa 사건에서 Hand 판사는 외국기업의 외국에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수입에 영향

을 미칠 의도였고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면 미국 독점금지법상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²³⁾ 1993년 Hartford Fire Insurance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혼선을 겪고 있던 하급심 판례를 정리하면서 진정한 충돌(true conflict)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영향이론에 기초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²⁴⁾ 이후 영향이론은 셔먼법상의 형사적 관할권 행사에까지 확대되었다.²⁵⁾

그런데 이와 같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의 법리는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소극적 관할권 행사에 머물지 않고 시장접근을 위한 법적 수단, 즉 통상법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²⁶⁾ 미국은 1982년 FTAIA법(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을 통하여 미국의 수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상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²⁷⁾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8년 미 법무

21) Id.

22)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75/AB/R, WT/DS84/AB/R.

23) "if they were intended to affect [U.S.] imports and did affect them." (148 F.2d 416 (2d Cir. 1945). Hand 판사는 "it is settled law-as (the defendant) itself agrees—that any state may impose liabilities, even upon persons not within its allegiance, for conduct outside its borders that has consequences within its borders which the state reprehends; and these liabilities other states will ordinarily recognize." (Id. at 443).

24) "[I]t is well established by now that the Sherman Act applies to foreign conduct that was meant to produce and did in fact produce some substantial effect in the United States." (509 U.S. 764, 796 (1993)).

25) 109 F.3d 1 (1st Cir. 1997), cert. denied, 522 U.S. 1144 (1998).

26) 독점금지법과 시장접근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다음을 참조. Eleanor M. Fox, *Toward World Antitrust and Market Access*, 91 Am. J. Int'l L. 1 (1997).

27) H.R. rep. No. 97-686, at 2-3 (1982), reprinted in 1982 U.S.C.C.A.N. 2487, 2487-88. 수입거래 또는 수입통상 이 외의 거래, 즉 수출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상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such conduct has 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A) on [domestic or import commerce]; or (B) on export trade or export commerce... of a person engaged in such trade or commerce in

부는 생산량을 감소시키거나 가격을 인상하여 미국의 소비자를 해하여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관할권을 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²⁸⁾ 그러나 1992년 미 법무부는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고 수출에 장애를 초래하는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상의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²⁹⁾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1995년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공동가이드라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³⁰⁾ 따라서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의 법리는 자국의 시장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의 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미국에서 독점금지법은 자국 소비자의 후생을 보호한다는 원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국의 수출기업의 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상법적인 성격을 매우 강하게 띠게 되었다. 실제로 미 정부가 수출시장의 접근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행사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을 통상법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수출시장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노정되었고 현재는 이와 같은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이 기본적으

로 국제법상 일방주의적인 한계를 노정하자 소위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 개념이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³¹⁾ 이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경쟁법을 역외적용 하기 보다는 자국의 역내에서 경쟁제한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동 국가의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과 EU간 경쟁법의 집행공조에 관한 양자협정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통상법적인 관점에서 사적 경쟁제한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시도도 지속되어 왔다. 예컨대 1988년 통상법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용인하는 국가에 대하여 통상법 제30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둈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Kodak-Fuji 사건에서는 Kodak사는 일본필름시장에서의 폐쇄적인 수직적 반경쟁관행에 대하여 통상법 제301조의 발동과 WTO 제소와 같은 통상법적 방법으로 경쟁법상의 문제에 접근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하였다.³²⁾ 최근에는 Mexico의 통신시장에 대하여 WTO 기본통신협정상의 “참고 문서(reference paper)”상의 경쟁규정을 원용하여 경쟁법상의 문제를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³³⁾ 그러나 통상협정에 경쟁법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규정을 담지 않는 한

the United States : and (2) such effect give rise to a [Sherman Act claim].”

28) US Dep't of Justice,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 n. 159 (1988).

29) DOJ Press Release (Apr. 3, 1992).

30) DOJ/FTC, International Antitrust Guidelines (1995).

31) See, e.g., OECD, Draft Revise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on Anticompetitive Practices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 OECD Doc. C(95)130 (1995).

32) 정영진, 미일 코닥-후지 필름분쟁사례연구 (상)(하), 통상법률, 1998년 8, 10월호.

33) Eleanor M. Fox, The WTO's First Antitrust Case-Mexican Telecom: A Sleeping Victory for Trade and

사적 경쟁제한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UR협상의 와중에서 일단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소위 “Munich Code”라고 하는 포괄적인 경쟁법의 실체규정을 만들어 WTO협정의 복수간 무역협정의 방식으로 부속서에 두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었으나³⁴⁾ 그 이후에는 이러한 포괄적인 제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도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규제하도록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시장접근에 관한 문제는 수직적 거래제한이 핵심적인 사안임에 비추어 동 OECD 권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WTO 차원에서도 경쟁 분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경쟁이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경쟁법 실체규정은 WTO협정에 담는 방안보다는 경쟁법의 집행에 관한 투명성 보장 및 비차별원칙의 적용과 같은 WTO협정의 핵심적 원리를 경쟁법의 집행에 확보하는 것이 관심대상이다. 경쟁법의 실체규정을 통상협정에 삽입하고 통상협정상의 집행방식을 통하여 경쟁법의 실체규정을 집행하는 방안은 경쟁법의 이론 및 실무적 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수직적 거래제한의 일유형인 결

합판매의 경우 미국, EU 및 우리나라의 경쟁법 공히 결합판매는 일정한 상황에서는 위법이라는 점은 확립되어 있으나 경쟁당국이 동 법리를 사실관계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³⁵⁾ 또한 경쟁법과 같이 고도의 사실판단 및 경제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다루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³⁶⁾ 경쟁에 관한 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FTA협정은 WTO협정에 비하여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이 경우도 협정에 경쟁법의 실체규정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경쟁법의 집행에 관한 투명성 보장 및 비차별원칙의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통상법과 경쟁법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법과 경쟁법은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으며 전자가 후자를 대체하거나 후자가 전자를 대체하는 데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다.³⁷⁾ 오히려 양자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관심을 갖고 양 법 영역의 상호발전(cross-fertilization)을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Compet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9(2), 271-292 (2006). See generally, Marco Bronckers and Pierre Larouche, The WTO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519, in WTO Jurisprudence and Policy: Practitioners' Perspectives (Marco C.E.J. Bronckers and Gary N. Horlick eds., 2004).

34) Draft of International Antitrust Code As A GATT/WTO-Plurilateral Trade Agreement, reprinted in 64 Antitrust & Trade Reg. Rep. (BNA) (19 August 1993).

35) 정영진, MS 사건의 국제경쟁법적 의의, 경쟁저널 2006년 2·3월호.

36) Youngjin Jung, Modeling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An International Antitrust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February 2000.

37) Michael J. Trebilcock and Edward M. Iacobucci, National Treatment and Extraterritoriality: Defining the Domains of Trade and Antitrust Policy, in Competition Laws in Conflict: Antitrust Jurisdiction in the Global Economy (Richard A. Epstein and Michael S. Greve eds., 2004).

3. 한미 FTA와 경쟁에 관한 장 (Competition Chapter)

우리나라는 기존에 체결한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에서 경쟁에 관한 장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편, 미국은 NAFTA 경쟁챕터를 FTA 경쟁협상의 기본 format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경쟁에 관한 장의 협상에서도 NAFTA 아래 논의되어 온 경쟁챕터의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경쟁에 관한 장은 대별하면 경쟁법 집행에 관한 부분, 지정독점(designed monopolies)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영기업(state enterprise)에 관한 부분 등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경쟁법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예외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아니나, 나머지 부분은 여타 FTA 챕터 상의 조항과 마찬가지로 FTA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된다.

미-호주, 미-싱가포르 FTA상의 경쟁논의를 보면 우선 서두에는 “목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 규정에서는 경쟁에 관한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가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명시되고,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의 후생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경쟁에 관한 장에서 문제되는 이슈에 대하여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FTA 당사국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규정을 둔다.

이하 위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3가지 이슈(경쟁

법 집행, 지정독점, 국영기업)에 대하여 미국의 기존 FTA에서의 입장에 비추어 한미FTA의 경쟁에 관한 장을 전망해 본다.

첫째, 미측의 기존 FTA상의 경쟁법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경쟁법의 집행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우선 양국의 경쟁당국이 반경쟁행위(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를 금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FTA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선언하면서 적정절차를 강조하게 된다. 예컨대 시정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독립적인 재판기관에서 경쟁당국의 조치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한미 FTA와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미국은 Microsoft 사건 당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Microsoft 심판절차에서 충분하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과정에서의 적정절차의 보장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리라고 예상된다. 이 이외에 양국의 경쟁당국이 동일한 상황에서 상대국의 국민(법인 포함)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슈는 경쟁법 집행에 관한 양자협정체결 문제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아직 경쟁법의 집행공조에 관한 양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양국간 동양자협정에 관한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FTA협정의 발효에 즈음하여 집행공조에 관한 양자협정이 체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위 양자협정은 경쟁당국이 자국

의 경쟁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사협조, 조사내용 통보, 협의, 정보교환, 일부 양자협정에서는 적극적 예상까지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협정 경쟁에 관한 장에서는 이러한 양자협정에 기초한 집행당국간 협력이 FTA 협정 지역 내에서의 효과적인 경쟁법의 집행에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호주 FTA에서는 소비자보호조항을 둔 바, 우리나라도 공정위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소비자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FTA 체결로 국경간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타국가에서 행하여지는 기망과 사기행위로 인하여 타방국가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경쟁당국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한미 FTA협상에서도 소비자보호조항의 삽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호주 FTA의 경우 상대국에서 얻은 금전적 손해배상 판결의 상호인정 및 집행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손해배상의 인정 및 사법체계에 상당한 차이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째, 지정독점에 대한 부분이다. 미국 기존 FTA상 정의에 따르면 지정독점은 정부가 협정 발효 후에 민간독점기업(private-owned monopoly)을 지정하거나 현재 또는 향후에 정부 독점(government monopoly)으로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독점이란 관련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의 유일한 공급자나 구매자로 지정된 실체

(entity)로서 친소시업이나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독점이란 일국의 중앙정부가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독점기업 또는 그러한 독점기업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독점기업을 말한다. 지정의 의미는 독점기업을 설립, 지정, 인가를 해주는 것 등을 포함하며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사실상 지정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지정 독점에 해당하는 실체는 경쟁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지적재산권으로 인하여 독점이 인정된 유일한 공급자는 제외한다.

우리 정부가 민간 독점기업을 지정한 예로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특별사업자제도를 들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항공우주산업(주)이 설립되었다. 동 사업자는 1999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재우주항공 3사가 통합되어 탄생한 것이다. 기타 농수산물 유통 분야의 다양한 실체들, 독점적으로 위성DMB사업을 하고 있는 TU미디어의 경우 등도 지정독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정독점에 해당하는 실체는 미측 기존 FTA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첫째, 정부지정 독점기업이 독점상품, 서비스 관련, 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FTA협정상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관련 상품이나 용역 매매시 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에 따라서 활동하여야 한다. 셋째, 독점상품이나 용역 매매시 상대

국 투자가, 상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비차별 대우를 하여야 한다. 넷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경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시장에서 경쟁제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 규정이 정부로 하여금 독점적 실체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정독점에 관한 위 제한사항은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국영기업에 대한 부분이다. 미측 기존 협정문안에 따르면 국영기업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영기업은 전술한 정부독점과 일견 유사하나 전자는 관련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는데 크게 보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투자기관”이란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중에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 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미측은 기존 FTA 협정문에서 국영기업에 대하여 위 지정독점기업의 의무사항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의무사항만을 부과해 왔다. 즉 국영기업은 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FTA 협정상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상품이나 용역 매도시 상대국 투자가에 대하여 비차별대우를 하여야 한다.

이때, 국영기업에 대한 부분은 GATT 제17조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에 대한 규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국영무역기업들이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 일반원칙인 비차별원칙 그리고 상업적 고려만

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영무역기업은 수출입 물량에 대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되며 관세양허의 가치를 보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국영무역기업은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총 7개로 모두 수출입에 대한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이 GATT의 국영무역기업과 FTA 협정상의 국영기업과 그 판정기준이 다르다. 전자는 수출입에 국한되는 것이며 그 의무사항도 FTA 협정상의 국영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차이가 있다.

일정한 경우에 지정독점기업과 국영기업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허용하는 조항이 미-싱가포르 FTA 협정 아래, 미-칠레 FTA, 미-호주 FTA에서 일관하여 도입되고 있다. 이는 NAFTA의 경쟁에 관한 장에서는 없는 조항으로서 기존 미국 입장에 따른다면 미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미 FTA에서도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조항에 따르면 별개의 시장, 또는 동일시장 내에서의 가격차별은 수요공급 등 통상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만으로서는 협정과 불일치하지 않는다. 동 조항은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미-싱가포르 FTA 협정에 삽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 조항의 존재의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투명성 확보와 정보요청시 제공의무에 관한 조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챕터와 경쟁챕터가 구별되는 특이점은 미측은 경쟁법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각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FTA 협정상 분쟁해결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그 외의 부분은 여타 챕터에서의 의무와 동일하게 분쟁해

결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협정에서도 경쟁챕터의 각 조문을 면밀히 살펴 분쟁 해결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체결한 기존 FTA 경쟁 협정문은 투명성과 정보요청에 대한 조문을 분쟁해결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경쟁법 집행에 관한 사항이 FTA협정상의 분쟁해결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협의(consultations)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국이 특정한 문제제기를 할 경우 그 문제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심어린 고려(full and sympathetic consideration)”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의 집행과정에서 적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4. 맷는 말

FTA협상은 WTO협상 등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일부 협상 분야만을 떼어내어 발효시키는 “early harvest” 방식을택하지 않고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각 협상 당사국은 협상의 막바지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상결과를 놓고 분야간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경쟁에 관한 장(Competition Chapter)도 이러한 조정대상의 하나일 것이다.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농산물이나 서비스 분야는 우리가 취약한 분야이다. 반면에 경쟁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많지 않은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 때문에 WTO DDA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경쟁분야에 강한 포지션을 취해 왔던 것이다.

한미 FTA협상에서도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에서의 협상력을 제고하는데 경쟁 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론적, 실무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무역구제 분야는 경쟁에 관한 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물론 미 정부의 협상팀은 미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통상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무역 구제 분야의 협상에서 미국의 국내법을 개정하게 되는 상황을 극력 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WTO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경쟁 분야에 대한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법체계라고 평가받고 있는 자국의 독점금지법의 약화에 대한 우려 이외에도 경쟁 분야 다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자칫 타회원국으로부터 반덤핑법을 비롯한 자국의 통상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의 통상법을 경쟁법으로 대체하자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양자의 긴밀한 관계에 기초하여 무역과 경쟁작업반을 설치하여 양 법제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자는 제안을 하거나 협상 분야 중 전반적으로 경쟁법의 원리가 침투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법상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쟁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협상의 레버리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연혁적으로 볼 때 캐나다는 미국과 FTA에 적극적으로 응한 이유가 FTA를 통하여 미국의 반덤핑 내지 상계관세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⁸⁾ 비록 법원의 사법심사를 대신하여 양자중재패널(bi-national panel)을 설치하는데 그쳤으나³⁹⁾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의 대안으로 경쟁법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NAFTA협상 당시에도 이 문제가 재조명을 받게 되었고 NAFTA 제1504조에서는 무역과 경쟁작업반을 설치하여 NAFTA 체결 후 5년 이내에 경쟁정책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권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도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반덤핑법을 포함한 통상법과 경쟁법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내 놓았다.⁴⁰⁾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반덤핑 내지 상계관세조치를 폐지하는 대신 경쟁규범을 도입하여 경제통합을 추구하여 왔다.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FTA에서도 당사국 사이에 반덤핑 내지 상계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물론 경쟁 분야를 무역구제 분야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WTO 등 여러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비추어 경쟁 분야를 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할 경우 미국측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협상목표 중

의 하나인 무역구제 분야 협상의 진전을 위하여 경쟁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전술한방안으로 포함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쟁에 관한 장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특히 FTA상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지정독점과 국영기업에 대한 조항, 투명성에 대한 조항 등이 FTA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준수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공정위가 지정독점과 국영기업에 대하여 왕성한 법집행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이는 사경제 주체에 대한 집행활동으로, FTA협정의 경쟁에 관한 장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의무사항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향후 FTA협상 진행과 함께 FTA상의 의무 준수를 위하여 국내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관련부처 및 기관에 대한 협정상 의무 설명을 통한 이해제고가 요청된다. 순수한 공정거래법의 집행 분야도 FTA 분쟁해결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협의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FTA협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적정절차의 내용이 공정위의 현재의 관행과 상치되거나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미리 철저히 검토 및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정치질서에 차지하는 위치에 비추어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통상협정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등 FTA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심적인 고려사항이었고 한미 FTA도 경제적 이

38) See Generally, Gabrielle Marceau, Anti-Dumping and Anti-Trust Issues in Free-Trade Area (1994).

39) Gary Clyde Hufbauer and Jefferey J. Schott, NAFTA Revisited: Achievements and Challenges 210-213 (2005).

40) Antitrust Sec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Task Force on the Competition Dimensions of NAFTA (1994).

해관계가 중요한 고려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한미 FTA는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체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유럽의 6개 국가가 경제공동체를 형성 하려고 할 때 GATT 제24조의 합치 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이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냉전체제하에서 국제정치적 고려가 컼고 미국이 FTA를 이스라엘과 최초로 체결한 것에서 보듯이 FTA는 국제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 냉전의 유제(遺制)가 아직도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강력한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온 미국과 FTA 협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통상협정을 떠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고 하는 경제 외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경쟁 분야를 포함 한 한미 FTA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국간 손익계산서도 단순한 경제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경쟁제를**